학생지도 규정

제정 2016.03.01.
개정 2018.02.28.
개정 2020.04.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한다) 학칙 제41조와 제42조의2의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과 대학생활 적응 및 인성 발달을 돕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학생지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재적생, 졸업생에 대한 지도와 지도 과정, 결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도체계 및 역할) 통합적 학생지도를 위해 관계 부서와 스쿨(학과)에서는 상호 협조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 스쿨(학과)은 학칙 41조에 의거 재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2. 학생상담부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진단)와 상담을 주관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3. 학생담당 부서는 학생지도와 학생복지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다루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4. 취업창업교육지원 담당부서는 진로실현과 관련한 교육, 상담 등의 취업지도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5. 학생활동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을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학생지도 및 상담) ①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각종 진로·심리검사(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따라 지도교수는 특이자에게 추가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본인이 담당한 재학생을 개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학생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종합정보시스템에 학생개별상담 실시 내용을 기록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④본 대학의 교직원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발달, 진로 선택을 위해 적극 상담에 임하며 이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전공역량평가) ①학생들의 전공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전공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공역량평가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종합적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강지도, 비교

과 프로그램 추천, 각종 공모전 추천 등의 후속 지도를 할 수 있다.

③전공역량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스쿨(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생이력관리) 제3조내지 제5조의 결과는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향후 학습 및 취업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7조(실태 및 만족도 조사) ①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대학 및 스쿨의 각종 사업과 교육체계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③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①학생지도에서 발생되는 상벌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기타 관련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